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6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김형동・金炳旭・박대수

정운천 · 임이자 · 서일준

정진석 · 이철규 · 이주환

김선교 • 배준영 • 이종성

최형두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,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, 농업인이 영농·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.

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직·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, 도농간 소득불균형 완화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,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57조의2제2항).

## 주요내용

- 가.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(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).
- 나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.
- 다.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57조의2제2항).

### 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 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) ①・② (생 략) 한 감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 로 받는 도로점용,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-----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31일----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(이하 이 항에서 "귀농인" 이라 한다)이 직접 경작할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(이하 이 항에서 "귀농 일"이라 한다)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「농지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- 2024년 12월 31일-----경감한다. 다만, 귀농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, 제3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 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.

### 1. ~ 4. (생략)
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 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## 1. ~ 5. (생략)

② 농어업인이 영농, 영림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

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
<u>2024년 12월 31일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2

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종업원분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제57조의2(기업합병 · 분할 등에 저 대한 감면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 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 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 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 만,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「법인세법」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~ 3. (생 략) ③ ~ ⑩ (생 략)

<u>2024년 12월 3</u>
1일
제57조의2(기업합병・분할 등에
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202</u>
4년 12월 31일
<u>20</u>
24년 12월 31일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⑩ (현행과 같음)